

의정부지방법원 2024. 4. 18 선고 2023가단4226 판결 [건물철거,토지인도및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의정부지방법원 2024. 10. 31 선고 2024나209548 판결

의정부지방법원 2024. 4. 18 선고 2023가단4226 판결

전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론종결 2024. 3. 14.

판결선고 2024. 4. 18.

주문

1. 이 사건 소 중 금전지급 청구 부분은 각하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, 포천시 C 임야 186㎡지상에 설치된 별지 감정서 도면표시 1,2,3,4,5,6,7,8,9,10,11,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가)부분 건축물 131㎡를 철거하고, 위 임야를 인도하라.
3.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4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 제2항, 피고는 원고에게 49,549,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, 2023. 7. 1.부터 주문 기재
임야 인도완료일까지 월 298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(갑1 내지 4, 을8)

가. 포천시 C 임야 186㎡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는 2008. 7. 2.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
2008. 7. 7.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.

나.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2009가소1629호로 지료 청구의 소를
제기하여, 2009. 8. 13. 위 법원으로부터 ‘피고는 원고에게 1,773,000원과 2009. 1. 1.부터 이
사건 부동산 중 도면 “ㄱ” 부분 131㎡를 피고가 원고에게 인도할 때까지 월 298,000원씩의 비율로
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’는 판결을 선고받고,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(이하 ‘이 사건 전소판결’이라 한다).

다. 원고는 이 사건 전소판결 이후 피고에게 계속 그때까지 발생한 지료 연체액수를 기재하여
지료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2010년, 2011년, 2012년, 2013년, 2015년 및 2022년 9월까지
수차례 보냈고, 피고는 위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으로 지료를 지급할 형편이 안 된다거나, 적절한
금액에 매입을 하라는 취지로 원고에게 내용증명을 2011년, 2012년, 2013년, 2014년, 2015년 및
2022년 10월까지 수차례 보냈다.

라.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지료 46,867,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각하판결을
선고받고 확정되었다(의정부지방법원 2022가단8252).

2. 지료청구에 대한 판단

원고가 청구하는 지료는 이 사건 전소판결과 소송물이 동일한 것이고, 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차례
이 사건 전소판결에 기한 지급 요청을 받고 원고에게 지료를 지급하기 어려우니 다른 합의를 하자는
취지의 내용증명을 2011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보냄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하기 전에 이 사건

전소판결에 기한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였으므로, 피고의 채무승인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.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전소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2022년 10월 무렵 중단되어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 당시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다고 볼 수 없고, 달리 시효연장을 위한 소의 이익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. 따라서 이 사건 치료청구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.

3. 철거 및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

피고가 이 사건 전소 판결에 따른 2년분 이상의 치료를 지체한 사실은 다툼이 없고 이를 이유로 한 법정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한다는 소장이 피고에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, 토지소유자인 원고가 민법 제287조에 의하여 한 지상권소멸청구는 이유 있다. 피고의 주문 기재 건물에 관한 법정지상권이 소멸하였으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철거하고, 이 부분 임야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.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.

4. 금전지급청구 부분은 각하하고, 철거 및 인도 청구 부분은 받아들인다.

판사 오성우

별지